



제418회국회(정기회)
제8차 환경노동위원회

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토양정화업 영업정지 대체과징금 신설 등 〉
■ 김위상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2653호)

2024. 11.

환 경 노 동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신항진

목 차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검토의견	3
1. 토양정화업 영업정지 대체과징금 신설	3
2. 지역토양보전계획 수립 시 환경부장관 사전 승인을 통보로 전환	9
3. 토양보전대책지역 지정 시 주민 의견 청취 의무화	12
※ 참고자료	15
1. 토양정화업 등록 및 등록요건	15
2. 토양정화업자 위반행위에 따른 대체과징금(안)	16
3. 토양정화업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시행규칙 별표12)	17
4. 토양보전대책지역 지정 및 관리 절차도	18
5. 지역 토양보전계획 개요	19

I. 제안경위

2024년 8월 8일 김위상의원이 대표발의한 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024년 8월 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오염토양은 토양정화업자에게 위탁하여 정화하도록 하고 있으며, 토양정화업자로 등록하려는 자는 등록기준에 따른 시설, 장비 및 기술인력을 갖추어야 하고, 이를 갖추지 못하는 경우 등에는 시·도지사가 영업정지 처분을 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토양정화업자가 영업정지 처분을 받음으로써 오염된 토양을 적기에 정화하지 못한다면 토양오염의 방치 및 오염물질 확산 등의 문제가 발생하여 주민의 건강·재산이나 환경에 피해를 미칠 우려가 있음에도 현재로서는 이를 해결할 방안이 없는 실정임.

이에 토양정화업자가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되는 경우 그 처분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익 제고 및 사업자 부담 완화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3조의15 신설).

또한, 토양보전대책지역의 지정 시 주민 의견 청취 규정을 둠으로써 해당 지역 주민 의견을 반영한 행정절차 진행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3항 신설).

아울러 기존에는 시·도지사가 지역 토양보전계획을 수립할 때 환경부장관의 승인이 필요하였으나, 이를 통보로 갈음하도록 하여 지방자치제도의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4항).

Ⅲ. 검토의견

1. 토양정화업 영업정지 대체과징금 신설

개정안은 토양정화업자에 대한 영업정지가 주민 생활에 심각한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시·도지사가 영업정지 처분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23조의15 신설).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제23조의15(과징금의 부과·징수 등) ① 시·도지사는 제23조의7제1항에 따라 토양정화업의 등록을 받은 자에 대하여 제23조의10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영업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영업정지가 주민의 생활이나 그 밖의 공익에 현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영업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매출액에 100분의 5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토양정화업자가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

현행	개정안
	<u>하는 경우에는 1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u> <u>②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되, 그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u> <u>③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제23조의10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을 하거나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징금을 징수한다.</u> <u>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과징금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이 경과되기 전에 제23조의10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영업정지를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u> <u>⑤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은 환경보전사업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u>

현행법 제23조의7¹⁾ 및 제23조의10²⁾에 따르면 토양정화업을³⁾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비, 기술인력 등을 갖추어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토양정화업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2년 이상 영업 실적이 없는 경우 등에는 시·도지사가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⁴⁾. 참고로, 최근 3년간 토양정화업자에

1) 「토양환경보전법」 제23조의7(토양정화업의 등록 등) ① 토양정화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제15조의3제3항 단서에 따라 오염토양을 반출하여 정화하는 경우에는 이를 반입하여 정화하는 시설을 포함한다), 장비 및 기술인력 등을 갖추어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2) 「토양환경보전법」 제23조의10(토양정화업의 등록취소 등) ① 시·도지사는 토양정화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2. 제23조의8에 따라 준용되는 제23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법인의 임원 중 제23조의3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에 3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바꾼 경우는 제외한다.

3. 영업정지처분 기간 중에 영업행위를 한 경우

② 시·도지사는 토양정화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토양정화업자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제15조의3제1항에 따른 정화기준 및 정화방법에 따라 정화하지 아니한 경우

2. 제15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오염이 발생한 해당 부지 및 토양정화업자가 보유한 시설이 아닌 장소로 오염토양을 반출하여 정화한 경우

3. 제15조의3제7항제1호를 위반하여 오염토양을 다른 토양과 섞어서 오염농도를 낮추는 행위를 한 경우

4. 제15조의3제7항제2호를 위반하여 토양정화업자가 등록한 시설의 용량을 초과하여 오염토양을 보관한 경우

5. 제15조의4를 위반하여 수탁받은 오염토양을 버리거나 매립 또는 누출·유출하는 행위를 한 경우

6. 제15조의6제5항을 위반하여 토양관련전문기관에 의한 검증이 완료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오염토양을 반출한 경우

7. 제23조의7제1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8. 제23조의9제1항을 위반하여 다른 자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토양정화업을 하게 하거나 등록증을 빌려준 경우

9. 제23조의9제2항을 위반하여 도급받은 토양정화공사를 하도급한 경우

③ 시·도지사는 토양정화업자가 등록을 한 후 2년 이내에营业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2년 이상 영업 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3) 「토양환경보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5. “토양정화”란 생물학적 또는 물리적·화학적 처리 등의 방법으로 토양 중의 오염물질을 감소·제거하거나 토양 중의 오염물질에 의한 피해를 완화하는 것을 말한다.

7. “토양정화업”이란 토양정화를 수행하는 업(業)을 말한다.

대해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한 건수는 24건임.

[토양정화업 영업정지 행정처분 건수]

(단위: 건)

연도	합계	1개월	3개월	6개월
2019	7	4	2	1
2020	6	5	1	-
2021	10	6	4	-
2022	7	1	6	-
2023	10	4	6	-
2024.9	7	1	6	-

자료: 환경부

[시·도별 토양정화업자 등록현황]

(2024년 9월 말 기준 단위: 개)

구 분	합계	서울	인천	부산	광주	대전	대구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경북	경남	전북	전남	제주	세종
토양정화업	67	19	4	6	2	-	1	1	20	2	1	7	3	-	-	1	-	-
토양정화시설 보유	28	5	2	3	1	-	1	1	7	1	1	4	1	-	-	1	-	-

자료: 환경부

그런데 토양정화업자가 업무정지 처분을 받게 되는 경우 오염토양을 적정 시기에 정화하지 못하여 토양오염이 방치되고 오염물질이 확산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오염 토양 인근 주민의 건강 및 재산, 인근 환경에 피해를 미칠 수 있는 우려가 있음.

이에 개정안은 이 법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하거나 변경등록을 누락하여 영업정지의 대상이 된 경우, 그 영업정지가 주민 생활에 심각한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이를 갈음하

4) 법 제23조의6 및 제23조의10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은 시행규칙 별표12에 규정되어 있음. 세부 기준은 참고자료2 참조.

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로서 타당한 것으로 보임.

다만, 환경부는 오염 토양의 적기 정화를 통해 토양오염 물질의 방치 및 확산을 예방하고 토양정화업자의 부담 완화와 타법의 적용례를 고려하여 영업 정지 사유가 고의 및 중대성이 없는 경우⁵⁾에 한정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므로, 이를 감안한 심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어 보임(참고자료2).

참고로, 개정안에 따른 과징금은 다수 국민이 이용하거나 국가·사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자의 의무위반에 대해 영업정지, 시설의 사용중지명령 등의 처분을 갈음하여 부과되는 이른바 ‘대체과징금’으로⁶⁾, 「물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 「폐기물관리법」 등 다수의 환경 분야 입법례에서도 그 근거규정을 두고 있음.

[환경 분야 대체과징금 부과 입법례]

법률명	적용대상	부과기준(상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6조	건설폐기물 처리업자	1억원
「하수도법」 제50조	관리대행업자	2억원
	분뇨 수집·운반업자	3천만원
「먹는물관리법」 제51조	먹는물관련 영업자, 검사기관	2억원
「자원의 절약과	포장재 및 제품 제조·판매·수입	10억원

5) 환경부는 제23조의10제2항제2호(오염토양의 반출 정화), 제3호(오염농도 낮추는 행위), 제5호(수탁받은 오염토양의 매립 또는 누출 등), 제8호(다른자에게 등록증 대여 등) 등의 경우에는 고의 및 중대성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영업정지에 갈음한 과징금 부과 적용을 제외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6) 과징금은 행정상 의무위반에 대하여 행정청이 부과하는 금전상의 제재로, ① 의무위반을 통해 얻은 경제적 이익을 박탈하기 위한 목적으로 부과되는 본래적 과징금과 ② 다수 국민이 이용하거나 국가·사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자의 의무위반에 대해 영업정지, 시설의 사용중지명령 등의 처분을 갈음하여 부과되는 변형된 형태의 과징금(대체과징금)으로 구분됨.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5		
「악취방지법」제12조	악취 신고대상시설 운영자	1억원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제17조	잔류성오염물질 배출사업자	3억원
「물환경보전법」제43조	폐수배출시설 설치·운영사업자	매출액의 5%
「대기환경보전법」제37조	대기배출시설 설치·운영사업자	매출액의 5%
「폐기물관리법」제28조	폐기물처리업자	매출액의 5%
「화학물질관리법」제36조	유해화학물질 영업자	매출액의 5%

또한, 국무조정실의 전수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0년 7월 기준 영업정지를 규정하고 있는 전체 156개 법률 중 78개 법률에서 대체과징금을 도입하는 등 현재 다양한 분야에서 대체과징금 제도가 보편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점을 참고할 필요가 있음⁷⁾.

7) 2020년 7월 국무조정실에서 발표한 「영업정지 대체과징금 제도 효율화 방안」에서 발표한 조사 결과임.

2. 지역토양보전계획 수립 시 환경부장관 사전 승인을 통보로 전환

개정안은 시·도지사가 토양보전기본계획에 따라 수립하는 지역토양보전계획 수립 시 사전에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도록 하는 현행 사전 승인 방식을 환경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한 후 시행하도록 하는 통보 방식으로 변경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4항).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4조(토양보전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 ③ (생략) ④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기본계획에 따라 관할구역의 지역토양보전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u>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u> 시행하여야 한다. 지역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⑤ (생략)	제4조(토양보전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 ----- ----- ----- ----- <u>환경부장관과</u> <u>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u> <u>한 후에</u> ----- -. ⑤ (현행과 같음)

현행법 제4조8)에 따르면 환경부장관이 수립하는 10년 단위의 토양

보전기본계획의 정책방향에 따라 특별시장, 광역시장 등 시·도지사가 지역토양보전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이를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⁹⁾.

그런데 지역토양보전계획의 경우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는 과정에서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수 있어 적기 시행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개정안은 지역토양보전계획의 사전 승인제도를 통보제도로 전환하려는 것으로, 지역계획을 적기에 수립하고, 지역 토양보전계획 수립 시 시·도지사의 권한 및 자율성을 부여한다는 점에서 타당한 측면이 있는

8) 「토양환경보전법」 제4조(토양보전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환경부장관은 토양보전을 위하여 10년마다 토양보전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토양보전에 관한 시책방향
2. 토양오염의 현황, 진행상황 및 장래예측
3. 토양오염의 방지에 관한 사항
4. 토양정화 및 정화된 토양의 이용에 관한 사항
5. 토양정화와 관련된 기술의 개발 및 관련 산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
6. 토양정화를 위한 기술인력의 교육 및 양성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토양보전에 필요한 사항

④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기본계획에 따라 관할구역의 지역 토양보전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 지역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⑤ 기본계획 및 지역계획의 수립방법, 수립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9) 「토양환경보전법」 제4조(토양보전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환경부장관은 토양보전을 위하여 10년마다 토양보전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④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기본계획에 따라 관할구역의 지역 토양보전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 지역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제4조(기본계획 및 지역계획의 수립방법 등) ① 환경부장관은 「토양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른 토양보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및 관계기관·단체의 장에게 기본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환경부장관은 기본계획이 수립되거나 법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토양보전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승인한 때에는 지체없이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를 받은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본계획 및 지역계획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것으로 보임.

다만, 통보 제도로 전환할 경우 상위계획인 토양보전기본계획과 지역별 지역토양보전계획 간 통일성이 저하¹⁰⁾될 우려가 있으므로, 「물류정책기본법」¹¹⁾, 「물환경보전법」¹²⁾ 등 유사 입법례를 고려하여 시·도지사가 지역토양보전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환경부장관과 협의하도록 하여 지역토양보전계획이 토양보전기본계획에 배치

10) 서울특별시는 지역의 토양보전계획 수립 후 국가정책의 목표에 부합되게 환경부와의 상호 검토과정이 필요함에 따라 현행유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음.

11) 「**물류정책기본법 제14조(지역물류기본계획의 수립)** ① 특별시장 및 광역시장은 지역물류정책의 기본 방향을 설정하는 10년 단위의 지역물류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③ 지역물류기본계획은 국가물류기본계획에 배치되지 아니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각 호는 생략)

「**물류정책기본법 제15조(지역물류기본계획의 수립절차)** ② 특별시장 및 광역시장은 지역물류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대통령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시·도에 인접한 시·도의 시·도지사 및 협의회 후 제20조의 지역물류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특별시장 및 광역시장은 수립하거나 변경한 지역물류기본계획을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특별시장 및 광역시장은 지역물류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이를 공고하고, 인접한 시·도의 시·도지사, 관할 시·군·구의 시장·군수·구청장 및 이 법에 따라 해당 시·도의 지원을 받는 기업 및 단체 등에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 후단에 따라 통보받은 지역물류기본계획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제19조제1항제1호의 물류정책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12) 「**물환경보전법 제23조의2(국가 물환경관리기본계획의 수립)** ① 환경부장관은 공공수역의 물환경을 관리·보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물환경관리기본계획을 10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국가 물환경관리기본계획(이하 “국가 물환경관리기본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중략)

제27조(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소권역계획 수립) ①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26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관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의견을 들어 소권역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1. 소권역계획 수립 대상 지역이 같은 시·도의 관할구역 내의 둘 이상의 시·군·구에 걸쳐있는 경우: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수립

2. 소권역계획 수립 대상 지역이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있는 경우: 환경부장관 또는 둘 이상의 시·도지사가 공동으로 협의하여 수립

3. 그 밖에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소권역계획의 수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수립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소권역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수립한 소권역계획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3. 토양보전대책지역 지정 시 주민 의견 청취 의무화

개정안은 토양보전 대책지역을 지정하고자 할 경우 사전에 주민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3항 신설 등).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7조(토양보전대책지역의 지정) ①·② (생략) <u><신설></u> ③ 제1항에 따른 대책지역의 지정 기준, <u>지정절차</u> 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생략)	제17조(토양보전대책지역의 지정) ①·② (현행과 같음) ③ <u>환경부장관은 대책지역을 지정하려면 미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국방상 기밀유지가 필요한 경우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u> ④ ----- --- <u>지정절차, 제3항에 따른 의견수렴 절차</u> -----. ⑤ (현행 제4항과 같음)

현행법 제17조는¹³⁾ 환경부장관으로 하여금 토양오염대책기준을 넘는 지역이나 관할 시장·군수·구청장 등이 요청하는 지역에 대해서 관

13) 「토양환경보전법」 제17조(토양보전대책지역의 지정) ① 환경부장관은 대책기준을 넘는 지역이나 제2항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요청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시·도지사와 협의하여 토양보전대책지역(이하 “대책지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대책지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②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구역 중 특히 토양보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에 대하여는 그 지역의 토양오염의 정도가 대책기준을 초과하지 아니하더라도 관할 시·도지사와 협의하여 그 지역을 대책지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환경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할 시·도지사와의 협의하여 토양보전대책지역으로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18조는¹⁴⁾ 토양보전대책지역의 관할 지자체장으로 하여금 주민건강 피해조사 및 대책, 토지 이용방안, 오염토양 개선사업 등이 포함된 대책계획을 수립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토양보전 대책지역 지정 시 주민의 토지 이용 또는 시설 설치 등을 제한받을 수 있는 점을 감안할 때 토양보전 대책지역 지정 초기단계부터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주민들의 알권리를 보호할 필요가 있으므로 개정안의 입법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임¹⁵⁾.

14) 「토양환경보전법」 제18조(대책계획의 수립·시행)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해당 대책지역이 둘 이상의 특별자치시·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을 말한다]은 대책지역에 대하여는 토양보전 대책에 관한 계획(이하 “대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관할 시·도지사와의 협의를 거친 후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

② 대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오염토양 개선사업

2. 토지 등의 이용 방안

3. 주민건강 피해조사 및 대책

4. 피해주민에 대한 지원 대책

5. 그 밖에 해당 대책계획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24조(대책계획의 수립 등) 법 제18조제2항제5호에 따라 대책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오염토양개선사업의 종류 및 방법

2. 단위사업별 주체 및 사업기간

3. 총소요비용 및 조달방안

4. 오염토양개선사업의 기대효과

5. 기타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15) 참고로,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서도 지역·지구 등을 지정 시 주민의견 청취 절차를 규정하고 있음,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지역·지구등의 지정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역·지구등을 지정(변경 및 해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따로 지정 절차 없이 법령이나 자치법규에 따라 지역·지구등의 범위가 직접 지정되는 경우

2. 다른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주민의 의견을 듣는 절차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

3. 국방상 기밀유지가 필요한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문 의 처
02) 6788-5533

※ 참고자료 1: 토양정화업 등록 및 등록요건

□ 등록 및 변경

- **(등록)** 토양정화업을 하려는 자는 시설, 장비 및 기술인력 등을 갖추어 시·도지사에게 신청*

* 시설·장비 및 기술인력 증명서류, 반입정화시설의 설치내역서 및 도면

※ 다른 법령에 따라 시설의 설치운영 금지 또는 제한되는 지역은 등록 불허

- **(변경)** 상호 또는 사업장 소재지, 대표자, 기술인력 변경

※ 반입정화시설은 해당 시설을 설치하는 관할 시·도지사에게 등록

□ 등록요건

- **(반입정화시설)** 정화시설 400㎡ 이상, 보관시설 400㎡ 이상*

* 토양정화업자가 보유한 시설로서 오염토양을 반입하여 오염토양의 정화기준 이내로 정화할 수 있는 시설

※ 반입정화시설은 필수 등록요건이 아니므로 반입정화시설이 없는 경우에도 토양정화업 등록은 가능

- **(장비)** 시료채취기, 휴대용 가스측정장비, 현장용 수질측정기, 지하수위측정기

- **(기술인력)** 7명 이상

- 박사 또는 기술사 1인 이상, 기사 1인 이상, 산업기사 2인 이상,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해당 관련 분야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는 사람 3명 이상

□ 등록현황

- '24.9월 현재 67개 업체 등록(반입정화시설 보유업체는 28개소)
- 2020년 전체 매출액은 3,755억원

※ 참고자료 2: 토양정화업자 위반행위에 따른 대체과징금(안)¹⁶⁾

- 고의 중과실인 3, 4, 6, 9번은 대체과징금 적용 제외
- 매출액의 5% 범위 내에서 영업정지 기간에 비례하여 부과

위 반 행 위	근 거 법 령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1. 등록을 한 후 2년 이내에 영업을 시작하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2년 이상 영업 실적이 없는 경우	법 제23조의10 제3항	매출액의 2/100	매출액의 3/100	매출액의 5/100
2. 법 제15조의3제1항에 따른 정화기준 및 정화방법에 따라 정화하지 않은 경우	법 제23조의10 제2항제1호	매출액의 2/100	매출액의 3/100	매출액의 5/100
3. 법 제15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오염이 발생한 해당 부지 및 토양정화업자가 보유한 시설이 아닌 장소로 오염토양을 반출하여 정화한 경우	법 제23조의10 제2항제2호	매출액의 2/100	매출액의 3/100	매출액의 5/100
4. 법 제15조의3제7항제1호를 위반하여 오염토양을 다른 토양과 섞어서 오염농도를 낮추는 행위를 한 경우	법 제23조의10 제2항제3호	매출액의 2/100	매출액의 3/100	매출액의 5/100
5. 법 제15조의3제7항제2호를 위반하여 토양정화업자가 등록한 시설의 용량을 초과하여 오염토양을 보관한 경우	법 제23조의10 제2항제4호	매출액의 2/100	매출액의 3/100	매출액의 5/100
6. 법 제15조의4를 위반하여 수탁 받은 오염토양을 버리거나 매립 또는 누출·유출하는 행위를 한 경우	법 제23조의10 제2항제5호	매출액의 2/100	매출액의 3/100	매출액의 5/100
7. 법 제15조의6제5항을 위반하여 토양관련전문기관에 의한 검증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오염토양을 반출한 경우	법 제23조의10 제2항제6호	매출액의 2/100	매출액의 3/100	매출액의 5/100
8. 법 제23조의7제1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법 제23조의10 제2항제7호			
가) 등록요건의 기술인력이 부족한 경우		매출액의 2/100	매출액의 3/100	매출액의 5/100
나) 갖추어야 할 장비가 부족한 경우		매출액의 2/100	매출액의 3/100	매출액의 5/100
9. 법 제23조의9제1항을 위반하여 다른 자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토양정화업을 하게 하거나 등록증을 빌려준 경우	법 제23조의10 제2항제8호			매출액의 5/100
10. 법 제23조의9제2항을 위반하여 도급받은 토양정화공사를 하도급한 경우	법 제23조의10 제2항제9호	매출액의 2/100	매출액의 3/100	매출액의 5/100

16) 자료: 환경부

※ 참고자료 3: 토양정화업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시행규칙 별표12)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1)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법 제23조의10 제1항제1호	등록취소			
2) 등록을 한 후 2년 이내에 영업을 시작하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2년 이상 영업 실적이 없는 경우	법 제23조의10 제3항	경고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3) 법 제23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가) 법 제23조의3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나) 법인의 임원이 법 제23조의3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3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바꾸지 않은 경우	법 제23조의10 제1항제2호	등록취소 등록취소			
3)의2 영업정지처분 기간 중에 영업행위를 한 경우	법 제23조의10 제1항제3호	등록취소			
4) 법 제15조의3제1항에 따른 정화기준 및 정화방법에 따라 정화하지 않은 경우	법 제23조의10 제2항제1호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등록취소
5) 법 제15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오염이 발생한 해당 부지 및 토양정화업자가 보유한 시설이 아닌 장소로 오염토양을 반출하여 정화한 경우	법 제23조의10 제2항제2호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등록취소
6) 법 제15조의3제7항제1호를 위반하여 오염토양을 다른 토양과 섞어서 오염농도를 낮추는 행위를 한 경우	법 제23조의10 제2항제3호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등록취소
7) 법 제15조의3제7항제2호를 위반하여 토양정화업자가 등록한 시설의 용량을 초과하여 오염토양을 보관한 경우	법 제23조의10 제2항제4호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등록취소
8) 법 제15조의4를 위반하여 수탁받은 오염토양을 버리거나 매립 또는 누출·유출하는 행위를 한 경우	법 제23조의10 제2항제5호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등록취소
9) 법 제15조의6제5항을 위반하여 토양관련전문기관에 의한 검증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오염토양을 반출한 경우	법 제23조의10 제2항제6호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등록취소
10) 법 제23조의7제1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법 제23조의10 제2항제7호				
가) 등록요건의 기술인력이 부족한 경우		경고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나) 등록요건의 기술인력이 전혀 없는 경우		등록취소			
다) 갖추어야 할 장비가 부족한 경우		경고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라) 갖추어야 할 장비가 전혀 없는 경우		등록취소			
마) 삭제 <2013.5.31>					
바) 삭제 <2013.5.31>					
11) 법 제23조의9제1항을 위반하여 다른 자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토양정화업을 하게 하거나 등록증을 빌려준 경우	법 제23조의10 제2항제8호	영업정지 6개월	등록취소		
12) 법 제23조의9제2항을 위반하여 도급받은 토양정화공사를 하도급한 경우	법 제23조의10 제2항제9호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등록취소

※ 참고자료 4: 토양보전대책지역 지정 및 관리 절차도



※ 참고자료 4: 지역 토양보전계획 개요¹⁷⁾

○ 목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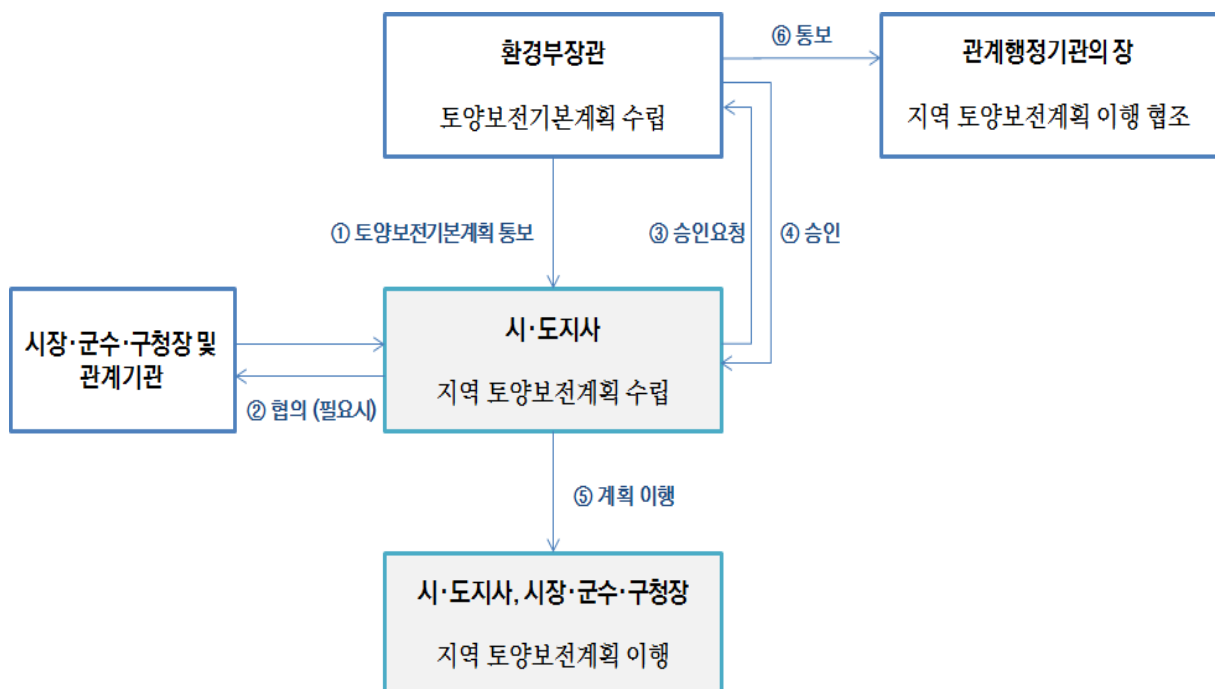
- 「토양환경보전법」 제4조제1항에 따른 토양보전기본계획 (이하 “기본계획”이라 함)의 정책방향에 따라 시·도지사가 관할구역의 자연·인문환경 특성을 고려하여 지역의 토양환경 보전에 관한 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함)을 수립

○ 수립 근거

- 「토양환경보전법」 제4조제4항 및 시행령 제4조제2항

○ 수립 절차

< 지역 토양보전계획(변경계획) 수립 흐름도 >



17) 자료: 환경부